

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용역명: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
- 나. 용역기간: 착수일부터 24개월(720일)
- 다. 사업현장: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~ 동문리 일원
- 라. 기초금액: 금19,971,600원(추정가격: 18,156,000원 , 부가세: 1,815,600원)
- 마. 용역내용

구분	규격	단위	전체	비고
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	임목폐기물 처리	ton	178	설계서 참조
	임목폐기물 운반	ton	178	

2.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·장소 및 입찰 방법

입찰공고일	2026. 7. 10.(금)
입찰서제출기간	2026. 7. 11.(토) 09:00 ~ 2026. 7. 21.(화) 10:00
개찰일시	2026. 7. 21.(화) 11:00
개찰장소	경기도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

- 가. 본 용역은 총액입찰, 제한경쟁(지역),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.
- 나.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, 전자입찰서는 제출 기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입찰참가자는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·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전자입찰이 취소된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라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(나라장터)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마. 입찰참가자는 관련 규정(「전자조달법」, 「지방계약법」, 계약예규, 고시 등)을 자세히 알고

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 등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◆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3. 입찰 참가자격

가.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

- ①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
- ②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(지정폐기물외 폐기물, 업종코드: 6770)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(지정폐기물외 폐기물, 업종코드: 6778)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(지정폐기물외 폐기물, 업종코드: 6786)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“임목폐기물” 또는 “폐목재”가 등록된 업체
- ③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·운반업(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, 업종코드: 1227) 허가를 받은 자

※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·운반하기 위해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7]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집·운반업 허가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.

나. **입찰공고일 전날**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)을 기준으로 한다]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]부터 **입찰일**(낙찰자는 계약체결일,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)까지 **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**(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가 **경기도에 있는 자**

다. 본 용역은 **단독 또는 공동계약(분담이행방식만 허용)**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.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라. 본 용역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 제4호 및 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 제44조 제3호에 따라 **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**입니다.

4.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

- 가. 공동계약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재활용업체로 합니다.
- 나.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.
- 다.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재활용업 55%, 수집·운반업 45%으로 합니다.
- 라.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. 7. 20.(월) 18: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.
- 마.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)에 따릅니다.

5.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예정가격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$\pm 3\%$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.
- 나. 낙찰자 결정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%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다.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6. 입찰보증금

- 가. 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같음하며,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 따라 조치합니다.

7. 입찰무효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」 등에 의합니다.

8.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

가.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9. 기타사항

가.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,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,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과업지시서,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※ 특히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‘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(붙임2) 및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(붙임3)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

나.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**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(부가세 제외)의 1.5%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**하여야 합니다.

다. 예비가격,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의 『입찰정보』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관련 부서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: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 이제형(☎031-8030-3683)
-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사항 :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김민정(☎031-8030-2296)
-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: 정부조달콜센터(☎1588-0800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0일

경기도청 북부청사 (분임)재무관

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

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
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
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」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: 예 ()

: 아니오 ()

(업체명)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,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이
오
기

주소:

업체명:

대표자: (인)

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10호 서식]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1쪽)

발주자	발주기관	발주부서	발주날짜
	발주내용		[] 공사 [] 용역 [] 물품 [] 기타
	수의계약 사유		
계약상대자 (확인인)	성명	소속	[] 개인 [] 법인 [] 단체 [] 기타
	연락처	주소	
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①	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	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③	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④	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⑤	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⑥	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⑦	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⑧	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○ ○ ○ ○

계약상대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